

「재무회계업무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06. 2. 28. 개정 판 (시행 2006. 3. 1.) → 2016. 2. 29. 개정 판 (시행 2016. 3. 1.)

바람 4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41/compare?from=352&to=353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1:11:52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예산요구서) 각 학부(과) 및 부서의 장은 전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학부(과) 및 부서에 속하는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이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9조(예산요구서) 각 학부(과) 및 부서의 장은 전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학부(과) 및 부서에 속하는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이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-02-29>
제10조(예산의 편성절차) ① 기획조정실장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종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, 총장은 이를 조정하여 예산 · 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총장은 전항의 조정에 있어서 각 학부(과) 및 부서장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. ③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	제10조(예산의 편성절차) ① 기획처장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종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, 총장은 이를 조정하여 예산 · 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-02-29> ② 총장은 전항의 조정에 있어서 각 학부(과) 및 부서장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. ③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제11조(의결예산의 제출 및 집행) ① 예산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장이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각 학부(과) 및 부서의 장에게 예산확정을 통보하며, 이 때부터 예산이 집행된다. ② 이사장 또는 총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까지 본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. ③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확정된 교비회계의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11조(의결예산의 제출 및 집행) ① 예산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처장이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각 학부(과) 및 부서의 장에게 예산확정을 통보하며, 이 때부터 예산이 집행된다. <개정 2016-02-29> ② 이사장 또는 총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까지 본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. ③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확정된 교비회계의 예산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3조(추가경정예산) ① 총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② 추가경정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년 1회로 하되, 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며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차액을 줄이도록 한다. ③ 이사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한다.	제13조(추가경정예산) ① 총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② 추가경정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년 1회로 하되, 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며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차액을 줄이도록 한다. ③ 이사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한다. <개정 2016-02-29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재무회계업무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"기획조정실장"을 "기획처장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①기획조정실장"을 "①기획처장"으로 하고, "한다."를 "한다. <개정 2016-02-29>"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기획조정실장이"를 "기획처장이"로 하고, "집행된다."를 "집행된다. <개정 2016-02-29>"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을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